

한국계슈탈트상담심리학회 :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계슈탈트상담심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근거): 본 위원회는 한국계슈탈트상담심리학회 회칙 제 9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 3조(명칭):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Korean Journal of Gestalt Counseling)라고 칭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

제 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제 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에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 5조(선정):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계슈탈트상담심리사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제 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3장 편집회의

제7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 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회의성립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위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위임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3.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1항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장 논문심사

제 9조(심사 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타당성
2. 문헌고찰의 적절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논의의 적절성
5. 논문체제의 적합성
6. 연구결과의 기여도
7. 국·영문 초록의 적절성

제 10조(심사 위원의 위촉): 편집 위원회에서는 게재 희망 논문의 성격과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심사 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 11조(심사 방법 및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논문의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2인의 심사 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의 종합 판정을 내린다.
3. 심사결과는 2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 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5.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사후검수를 할 수 있다.

제 5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 12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 적어도 1인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계슈탈트상담심리학회 회비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 회에서 특별 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3조(투고원고 종류): 원고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과 사례연구이어야 한다.

제 14조(학위논문투고):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위논문의 경우, 5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예시. 본 연구는 저자명(연도)의 00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목'을(를) 요약(or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3.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이외의 연구자와 공동게재 할 수 없다.
4.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교신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1 페이지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 15조(이중투고 금지): 본 학회에 논문을 공식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거나, 심사 완료되어 논문이 정식 게재된 경우, 동일 논문 또는 내용상 상당한 중첩된 유사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단, 정식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투고/게재 철회요청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다른 학회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다.

제 16조(게재제한): 한 연구자가 한 호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는 원칙적으로 2편까지

허용하나, 게재되는 원고 2편 중 한 편에서 반드시 주저자여야 한다.

제 17조(원고의 사용언어): 모든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원고의 경우 영어도 가능하다.

제 18조(원고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논문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고는 게재신청서, 연구진실성준수서약서와 함께 온라인 접수한다.

제 19조(학회지 발간 및 접수): 학회지는 6월 30일(1호)과 12월 31일(2호)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또한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기한 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를 무효로 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특별 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 20조(원고의 내용): 제출된 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21조(저작권):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본 학회지에 논문의 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시하지 않아도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한국계슈탈트상담심리학회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2조(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심사료는 다음과 같다. 1차 심사료 3만원, 2차 심사료 2만원으로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심사료 변경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논문 게재료는 학회지 발간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액수를 기고자들이 균등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3조(별쇄본): 논문 별쇄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 24조(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